

# 완 산 학 원 정 관

[2022년 6월 개정]

학교법인완산학원



# 학교법인 완산학원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완산학원(完山學園)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완산중학교
2. 완산여자고등학교(변경인가 2005. 9. 1. 행정과-4983 )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60(평화동1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등)** ①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에 규정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사·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2(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에 규정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 ③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에 규정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21조(삭제)**

## 제3장 기관

###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명 (이사장 1명, 개방이사 3명 포함)
2. 감사 2명 (추천감사 1명 포함)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시이사 체제 이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이사의 반 수의 최초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해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를 기재한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필요시 관할청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는 상호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아니되며, 새로이 선임되는 이사는 기존의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제25조의2(개방이사와 감사의 자격)** ① 법인의 개방이사 및 제25조 제5항에 따른 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는 설립목적 구현이 가능한 자이여야 한다.

- ② 개방임원은 지역사회 인사 또는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③ 필요시 관할청에 개방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3(개방임원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 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임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③ 법인은 개방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5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④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안에 대상인원의 2배수(감사는 단수 추천)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5조의4(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완산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완산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즉시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새로이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의2(청렴의무) ①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3(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① 임원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30조의4(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제29조 제5호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한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9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수의사업

제36조(수의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7조(수의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1. 상가 임대사업
2. 토지 임대사업

제38조(수의사업체의 주소) 수의사업체의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60에 둔다.

1. 상가 임대사업
  - ①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2-12
2. 토지 임대사업
  - ①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8-8, 18-9
  - ②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20-1, 20-3, 20-4, 20-5, 20-6, 20-7, 20-18

제39조(관리인) ① 수의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해 관리인을 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목적 달성의 불가능
  2.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3. 파산
  4.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감의 해산명령
-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다른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원

#### 제1관 임용

**제43조(임용)**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

⑤ 제6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항에 따른다.

⑥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⑦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43조의2(기간제 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한다.

**제43조의3(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준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임기 전이라도 제1항에 의한 교원 정년 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



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전형결과 공개)** ①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다.

##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임용권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이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 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별지부록)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인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④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원의 복직에 관한 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4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48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는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3(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
2.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
3.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10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감으로 하며, 선출직 인사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원은 선출직 인사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계약제교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회의소집일, 회의개최일, 회의소집장소, 회의개최·마침시간
- 2. 안건
- 3. 위원별 발언 및 토의내용
- 4. 출석한 위원
- 5. 표결 수

② 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출석 위원 중 3명을 호선하여 대표로 회의록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 세부 규정에 따른다.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 ① 비위 교원에 대한 적법한 징계를 위해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외부위원 포함)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 절차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절 ‘징

계' 와 같은 법 시행령 정계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59조의2 ~제68조(운영세칙) (삭제)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69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0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0조의2(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다.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⑧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2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에 시작한다.

**제7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 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였을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제3호, 제4호 내지 제7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76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급식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9.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10.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정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을 따른다.

**제77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의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것을 관할교육청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8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79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9조의2(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80조(삭제)**

**제81조~제92조(삭제)**

#### 제5절 사무직원

**제93조(임용)** ①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승진,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직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관리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관할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하되, 신규임용의 시험과목 ·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



로 임용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⑥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다.

**제94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관할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정년)**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제96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96조의2(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공로연수)** 정년이 될 때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3월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신청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로연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9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 직제

### 제1절 법인

**제100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교육행정 6급으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업무에 필요한 경우 학교 소속 직원을 학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임시킬 수 있다.

## 제2절 완산여자고등학교

### 제101조(교장 등)

- ① 교장 1명과 교감 1명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02조(하부조직)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교육행정 6급으로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의 직급은 관할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조정원 기준에 따라 최상위 직급으로 한다.)

## 제3절 완산중학교

### 제103조(교장 등)

- ① 교장 1명과 교감 1명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04조(하부조직)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교육행정 6급으로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의 직급은 관할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조정원 기준에 따라 최상위 직급으로 한다.)

## 제4절 정원



제105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학교급 및 직급별 정원은 관할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하며, 직렬별 정원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장 보칙

제10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

항은 전복지방신문에 공고한다.

제10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범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김 현 성		4	
이 사	김 현 철		4	
이 사	장 수 환		4	
이 사	백 원 기		4	
이 사	임 병 식		4	
이 사	은 성 후		2	
이 사	한 태 수		2	
이 사	박 종 오		2	
이 사	김 영 배		2	
이 사	노 승 환		2	
감 사	문 성 근		2	
감 사	이 희 근		1	

####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기능직원 및 고용직원(기능직으로 직종전환 경우 포함)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로서 기능직으로 직종이 전화되지 아니한 고용직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징계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교원 징계 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 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변경된 교명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30일인가(행정81422-1959)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9. 01. 행정과-498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1. 25. 교육지원과-58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3 . 26. 교육지원과-32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교육지원과- 53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9. 교육지원과-1464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20. 예산과- 327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5. 14. 예산과- 415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정관의 변경)는 2012.7.27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7. 예산과- 1466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2016.3.1.)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 규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③ 제4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이 시행 전에 임용된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43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완산중학교							완산여자고등학교						
구분	직종	일반직				구분	직종	일반직					
	직군	행정		기술			직군	행정		기술			
	직렬	교육행정		시설관리			직렬	교육행정		시설관리			
	직급	6급	7급	8급	8급		직급	6급	7급	8급	8급		
10~12학급	1	1	1	1		9학급		1	1	1	1		
13~24학급	1	1	2	1		10~23학급		1	1	2	1		
※ 신규채용은 최저직급(9급) 원칙													

